

2016.05.27

## 「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 입안계획서

### 1. 개정이유

- 「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.
-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① 「관세법시행령」 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위원회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절차 정비
  - ② 4세대 국종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
  - ③ 중소·중견기업 지원 및 EU측의 GATT협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국산품 매장을 중소·중견제품 매장으로 전환
  - ④ 면세업계의 비용 절감 및 물품인도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국산품도 현장 인도할 수 있도록 개선
  - ⑤ 대리구매, 불법유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면세품 판매 시 출국자 본인여부 및 본인명의 결제수단에 대한 확인 강화

### 2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수출입물류과
- 담당자 : 김용익 사무관 (☎042-481-7821)
- 제출기한 : 2016. 06. 14
- 제출방법 : E-mail : ysseo@customs.go.kr,  
FAX : 042-481-7829

2016.05.27

### 3. 주요 개정내용

#### □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국산품 매장 설치를 중소·중견기업

##### 제품 매장 설치로 전환

- 중소·중견기업 제품 매장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(제2조)
- 매장면적의 20%이상 또는 864m<sup>2</sup>\*이상  
(중소 면세점은 10%이상 또는 288m<sup>2</sup>이상)  
중소·중견기업 제품 매장 설치(제5조)
- 상품 구성, 매장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여 중소·중견매장 설치  
규정은 신규특허 또는 특허 갱신 시점부터 적용(부칙)

#### □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규정

##### 신설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(제6조, 제8조~제10조)

-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(제6조), 출국장면세점  
심의를 위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폐지(제8조~제10조)

#### □ 대리구매, 불법 국내유출 예방을 위해 관련 절차 정비

- 여권, 탑승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, 결제수단은 본인 명  
의인지 확인 후 판매(제15조)

**세인  
소식지**

www.seincustoms.com

2016.05.27

**□ 4세대 국종망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식 신설 및 개정**

- 면세점 실물 흐름에 맞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 신설(제16조)
- 미인도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미인도물품 해제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실무에 맞춰 관련 절차 및 서식 신설(제27조)

**□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**

-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인터넷 매장에서 구매한 국산품도 현장인도 대상에 포함(제22조)
- 세관장이 재고조사 시 면세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공약한 사회공헌 등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강화(제32조)
- 주의처분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 할수 있도록 개정(제37조)
- 보세화물 집중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 면세점 관할세관을 일부 조정(제41조)

#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 
『붙 임』 -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- 신구대조표

##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 고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 제<u>174조</u>, 제<u>176조의2</u> 및 제<u>196조</u>에 따른 보세판매장 설치·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 제<u>174조부터 제182조 및 제196조</u>에 따른 보세판매장 설치·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임받은 상위법 규정 명확화</li> </ul>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~3. (생략)</p> <p>4. “<u>국산품 매장</u>”이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과 주문자생산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국내 상표의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.</p> <p>5~12. (생략)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<u>중소·중견기업 제품 매장</u>”이란 「<u>중소기업기본법</u>」 제<u>2조</u>에 따른 중소기업, 「<u>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<u>2조 제1호</u>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·중견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가 제조·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.</p> <p>5~12.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·중견기업 지원 및 국가간 무역 협상력 제고를 위해 ‘국산품 매장’을 ‘중소·중견제품 매장’으로 전환</li> <li>* ‘국산품 매장 운영’ 규정과 관련하여 EU상품 무역위원회에서 ‘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 GATT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’가 있다고 문제 제기</li> <li>* 새누리당 중소특위(‘15.4), 경제관계장관회의(‘15.7)에서 ‘국산품매장’을 ‘중소제품매장’으로 변경 요청</li> </ul>
제 2 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심사	제 2 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심사	

현행	개정안	비 고
<p><b>제5조(운영인의 의무)</b>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40%이상 또는 825m<sup>2</sup>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 매장면적의 20%이상 또는 330m<sup>2</sup>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⑪ (생략)</p>	<p><b>제5조(운영인의 의무)</b></p> <p>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20%이상 또는 864m<sup>2</sup>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면적의 10%이상 또는 288m<sup>2</sup>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⑪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항이 운영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문의 규정은 삭제</li> <li>-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·중견제품 매장 설치 신설</li> </ul> <p>* 면적(<math>864\text{m}^2</math>)=[시내면세점 전체 매장면적 (<math>73,441\text{m}^2</math>)×20%]/17 ('15.11월 기준)</p>
<p><b>제6조(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)</b></p> <p>①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보세판매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각 본부 세관(직할세관 포함)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(이하 “특허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</p>	<p><b>제6조(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)</b></p> <p>① 시행령 제192조의8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(이하 “특허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관세청 차장과 통관지원국장이 되고, 간사는 수출입물류과장이 된다.</p> <p>②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위원 후보자에게 시행령 제192조의8제3항에 해당 여부를 확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허심사위원회 법제화에 따라 세부 절차 정비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관세청 차장, 부위원장은 통관지원국장으로 하고, 간사는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으로 하며,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「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3조제2항에 따른다.</p> <p>③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하며, 관세청장이 매 회의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부터 15인까지를 선임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세청 및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2. 학계, 연구기관, 경제단체, 시민단체,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</li> </ul> <p>④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야 하며, 안건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</p>	<p>하고,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특허심사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장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시행령 제192조의8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에게 회의 3일전 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고, 회의 2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심의 안건을 배포한다. 다만, 비밀유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보 및 배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기본요건 충족여부</p> <p>2.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</p> <p>3.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</p> <p>⑥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출 국장면세점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 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⑦ 위원장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3일 전까 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 여야 하며,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 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 여야 한다. 다만, 비밀유지 등의 사유 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 및 배포일정 을 조정할 수 있다.</p>	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⑧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의결한다.</p>		
<p>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심사절차 등</p> <p>제8조(특허신청 절차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심사절차 등</p> <p>제8조(특허신청 절차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  <u>다만, 특허신청 업체가 많아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하며, 관세청장은 최종 사업자선정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국장면세점도 특허심사위원회 의결을 위해 검토의견서 송부</li> <li>- 특허신청업체가 많은 경우 사전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④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본부세관장에게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	
<p>⑤ 본부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-4조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허 신청자의 평가 등을 심의하고, 그 결과를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	
<p>⑥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	
<p>제9조(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) ① 관세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승인</p>	<p>제9조(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) ① 관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전</p>	<p>- 특허심사위원회 법제화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 고
<p><u>신청을 받은 경우</u> 사전승인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<u>제6조에 따른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</u> 사전승인여부를 <u>의결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</u> 법 제176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별도의 세부 평가표를 마련하여 심의한다.</p> <p>1~7. (생략)</p>	<p>승인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<u>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</u> 사전승인여부를 <u>의결한다.</u></p> <p>② <u>특허심사위원회는</u> 법 제176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-----</p> <p>1~7. (현행과 같음)</p>	
<p>제10조(특허여부 결정 등) ① 관세청장은 <u>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의결을 받은 날 또는 출국장면세점 관할 세관장으로부터</u>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<u>세관에</u>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 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</p>	<p>제10조(특허여부 결정 등) ① 관세청장은 <u>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</u>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<u>세관장에게</u>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 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</p>	<p>- 특허심사위원회 법제화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 고
<p>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. 다만,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u>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</u>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4장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</p> <p>제15조(구매자 및 구매총액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출국장면세점과 <u>시내면세점(국산품 매장 포함)에서는</u>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(선)에 의한 임시 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 한도를 물품총액 미화 3,000불 이하로 하며,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의 구매 한도 범위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</u></p>	<p>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. 다만,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u>특허심사위원회에서</u> 추가연장 여부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장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</p> <p>제15조(구매자 및 구매총액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출국장면세점과 <u>시내면세점에서는</u>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(선)에 의한 -----</p> <p>③ <u>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「관세법시행규칙」 제69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미화 3,000불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</u></p>	<p>- 국산품 매장 운영 규정 삭제 반영</p> <p>-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한다. 다만, 관광여객선으로 여행하는 출국내국인에 대한 구매 및 판매한도 총액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통관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④ 운영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	<p>한다.</p> <p>④ 운영인은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매자가 출국하는 본인인지 여부와,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5조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행가이드 등의 대리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여부 확인절차 강화</li> </ul>
<p>제16조(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 검사신청)</p> <p>①~② (생 략)</p> <p>③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 반입검사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</p>	<p>제16조(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 검사신청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 반입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(별지 제5-1호 서식)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반입검사 연장신청을 위한 서식 규정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문서로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, 반입검사 신청서(수입신고서양식 사용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7조에 따른 내국물품, 제25조에 따른 양수물품, 제27조에 따른 미인도 물품과 제28조에 따른 반품 및 교환물품(적하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송 반입물품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1. 반입신고서사본(물품반입시 <u>전자</u> 문서에 의거 반입신고되었을 때에는 생략함)</p> <p>2~4. (생 략)</p> <p>⑤ (생 략)</p> <p>⑥ 세관장이 제5항에 따라 반입검사 신청서를 심사·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</p>	<p>1. 반입신고서사본(물품반입시 <u>전자</u> 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)</p> <p>2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세관장이 제5항에 따라 반입검사 신청서를 심사·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</p>	<p>- 문구 수정</p> <p>- 문구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확인사항을 통보한다.</p> <p>1~2. (생략)</p> <p>3. <u>제5항</u>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</p> <p>⑦ 세관장은 <u>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 제출시</u> 업체의 성실도, 물품의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수입 C/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 비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사항을 통보한다.</p> <p>1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4항</u>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</p> <p>⑦ 세관장은 <u>반입검사를 위하여 업체의 성실도 -----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변경된 조항 반영</li> <li>- 문구 수정</li> </ul>
<p><b>제22조(판매물품의 보세운송)</b> ①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(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<u>판매물품 포함 한다</u>)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(별지 제16호 서식,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포함한다)을 발행하여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</p>	<p><b>제22조(판매물품의 보세운송)</b> ①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(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<u>판매물품을 포함 한다</u>). 이하 같다)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(별지 제16호 서식,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포함한다)을 발행하여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----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구 수정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</p> <p>②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<u>시내면세점</u>의 국산품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 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·전자티켓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여야 하며,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매한 물품 또는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장에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과 구분·적재하여 운송한 후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.</p> <p>③~⑥ (생략)</p>	<p>②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<u>시내면세점</u>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-----</p> <p>③~⑥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산품매장 삭제 반영,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국산품도 현장인도 할 수 있도록 개정</li> </ul>
<p>제27조(미인도 물품의 처리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<u>제2항에</u>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에 대하여는 반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재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부패, 변질 등의 우려</p>	<p>제27조(미인도 물품의 처리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2항에</u>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(별지 제25호 서식)을 거쳐 재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절차규정 없이 제출하고 있는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가 있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다.</p>	매할 수 있다. 다만, -----	
<p>제28조(반품, 분실물등의 처리)</p> <p>①~② (생 략)          ③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. 다만,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, 위반사항이 「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」 <u>제13조의2제1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(송치)의뢰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8조(반품, 분실물등의 처리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③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. 다만,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, 위반사항이 「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」 <u>제14조제1항</u> -----</p>	- 관련 고시 개정 조항 반영

현행	개정안	비 고
<p>제5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</p> <p>제32조(세관장의 업무감독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, 외국반출현황, 재고량 및 제37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(이하 “재고조사”라 한다)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보세판매장 설치·운영 특허 후 결산 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 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세관장은 <u>제2항의 재고조사시에는</u> 법 제26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,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</p>	<p>제5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</p> <p>제32조(세관장의 업무감독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, 외국반출현황, 재고량, 제37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 <u>및 특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</u> 조사하여야 하며(이하 “재고조사”라 한다)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세관장은 <u>재고조사시 필요한 경우</u> 법 제26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-----</p>	<p>- 재고조사시에 특허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, 고용 및 사회공헌 등에 대한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</p> <p>- 문구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, 제17조,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,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<u>제11조제2항</u>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</p> <p>1~2. (생략)</p>	<p>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1조, 제17조,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,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<u>제11조제3항</u>에 따라 -----</p> <p>1~2. (현행과 같음)</p>	<p>- 관련 법률 개정 조항 반영</p>
<p>제33조(담당공무원의 임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 다만,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1~5. (생략)</p>	<p>제33조(담당공무원의 임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~5. (현행과 같음)</p>	

현행	개정안	비 고
<p>6. 외교관면세점의 <u>외교통상부장관</u>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7~12. (생 략)</p> <p><u>제37조(행정제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의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,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하며, 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.</u> 1~9.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고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,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한다. 1~11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</p>	<p>6. 외교관면세점의 <u>외교부장관</u> 승인 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7~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7조(행정제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의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,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한다.</u> 1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~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1년내에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때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정부직제 개정 반영</p> <p>- 횟수 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2항제12호에 1년 내 3회 이상 주의처분 시 경고처분 할 수 있도록 개정</p> <p>- 중복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기간을 1년으로 명확화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~5. (생 략)</p> <p>6.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</p> <p>⑤ (생 략)</p>	<p>1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제3항제1호부터 제2호,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복규정으로 제3항제3호 제외 (제3항제3호가 고의에 대한 규정임)</li> </ul>
<p>제6장 보칙</p> <p>(신 설)</p>	<p>제6장 보칙</p> <p><u>제41조(세관의 관할구역)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2조에 따라 집중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양세관, 구로 비즈니스센터의 업무는 서울세관장이 수행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세화물 관리의 전문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구역 조정</li> </ul>
<p><u>제41조(규제의 재검토) (생 략)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42조(규제의 재검토)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부칙 &lt;고시 제2016-00호, '16.0.0&gt; 이 고시는 201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또는 특허 갱신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며,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항 변경</li> </ul>

현행	개정안	비 고
(별지 제1호 서식) 보세판매장 설치 · 운영 특허 신청서	<p><u>하는 사업자는 기준 규정을 적용한다.</u></p> <p><u>(별지 제1호 서식) 보세판매장 설치 · 운영 특허 신청서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“ 불임과 같이 개정 ”</u></p>	-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(수출입물류과-1337, 16.4.6)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
(별지 제3호 서식) 보세판매장 설치 · 운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	<p><u>(별지 제3호 서식) 보세판매장 설치 · 운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“ 불임과 같이 개정 ”</u></p>	-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(수출입물류과-1337, 16.4.6)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
(별지 제4호 서식) 보세판매장 승계 신고서	<p><u>(별지 제4호 서식) 보세판매장 승계 신고서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“ 불임과 같이 개정 ”</u></p>	-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(수출입물류과-1337, 16.4.6)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
<신 설>	<p><u>(별지 제5-1호 서식) 보세판매장물품 반입 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(승인)서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“ 불임과 같이 신설 ”</u></p>	-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(수출입물류과-1337, 16.4.6)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
<신 설>	<p><u>(별지 제25호 서식)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서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“ 불임과 같이 신설 ”</u></p>	-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(수출입물류과-1337, 16.4.6)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

(별지 제1호 서식)

보세판매장 설치·운영 특허 신청서				처리기간 8일
기본 정보	① 업체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		③ 법인등록번호	
	④ 대표자 명	외 ( )명	⑤ 주민등록번호	
	⑥ 사업자등록증주소			
	⑦ 본지사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일		
⑧ 대표전화번호		⑨ 대표팩스번호		
업체 정보	⑩ 보세판매장 명칭		⑪ 보세판매장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출국장면세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내면세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교관면세점
	⑫ 소재지		⑬ 자본금	
	⑭ 면적(⑮+⑯+공용)			
	⑮ 건물의 구조, 동수와 면적 (판매장)			
	⑯ 부대시설의 구조, 동수와 면적(보관창고)			
	⑰ 판매물품			
	⑱ 설치운영 기간			
	⑲ 설치운영 목적			
	⑳ 전화번호		㉑ 팩스 번호	

「관세법」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5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일 : 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### ○ ○ 세 관 장 귀 하

첨부 서류	1. 사업계획서	수수료
	2.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)	
	3.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(매장, 보관창고 및 주차장) 사본	
	4. 「전기사업법」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(단,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)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	
	5.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(다만,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) 또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(신축건물만 해당)	
	6.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(별지 제3호 서식)

보세판매장 설치·운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				처리기간 8일	
기본 정보	① 업체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		
	④ 대표자명	외 ( )명	⑤ 주민등록번호		
	⑥ 사업자등록증주소				
	⑦ 본지사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일			
	⑧ 대표전화번호		⑨ 대표팩스번호		
업체 정보	⑩ 보세판매장 명칭		⑪ 보세판매장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출국장면세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내면세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교관면세점	
	⑫ 소재지		⑬ 자본금		
	⑭ 면적(⑮+⑯+공용)				
	⑮ 건물의 구조, 동수와 면적 (판매장)				
	⑯ 부대시설의 구조, 동수와 면적(보관창고)				
	⑰ 판매물품				
	⑲ 현재 특허기간		⑳ 갱신 특허기간		
	㉑ 갱신 사유				
	㉒ 전화번호		㉓ 팩스번호		

「관세법」 제176조의2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6 및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일 : 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### ○ ○ 세 관 장 귀 하

첨부 서류	1.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.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) 3.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(매장, 보관창고 및 주차장) 사본 4. 「전기사업법」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(단,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)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5. 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(다만,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) 또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(신축건물만 해당) 6.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	수수료
-------	--	-----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(별지 제4호 서식)

보세판매장 승계 신고서				처리기간 5일	
승계인	① 업체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	
	③ 법인등록번호				
	④ 사업자등록증주소				
	⑤ 대표자명	외 ( )명	⑥ 주민등록번호		
피승계인	⑦ 업체명		⑧ 사업자등록번호		
	⑨ 장치장부호		⑩ 법인등록번호		
	⑪ 보세판매장 명칭		⑫ 보세판매장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출국장면세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시내면세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교관면세점	
	⑬ 사업자등록증주소				
	⑭ 대표자명		⑮ 주민등록번호		
	⑯ 면적(⑰+⑱+공용)				
	⑰ 건물의 구조, 동수와 면적 (판매장)				
	⑲ 부대시설의 구조, 동수와 면적(보관창고)				
	⑳ 판매물품				
	㉑ 특허기간				
승계사유					
승계일자					
<p>「관세법」 제17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및 「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.</p> <p>신고일 : 20 년 월 일 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</p>					
○ ○ 세 관 장 귀 하					
첨부 서류	1.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) 3. 해당 보세판매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(매장, 보관창고 및 주차장) 사본 4. 그 밖의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			
	<p>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				
	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
	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 <sup>2</sup> (재활용품)]				

(별지 제5-1호 서식)

신청번호: <b>판매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(승인)서</b>							처리기간 1일	
①보세판매장명					②보세구역부호			
③ 일련 번호	④ 반입 년월일	⑤화물관리번호			⑥ B/L번호	⑦ 품 명	⑧ 금 액(\$)	⑨ 반입검사기한일
		MRN	MSN	HSN				
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신청 내역								
⑩ 신청일								
⑪ 연장사유								
<p>「관세법」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, 「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 검사 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○ 세 관 장 귀하</p>				<p>「관세법」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, 「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 검사 신청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 ○ 세 관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직인</p>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(별지 제25호 서식)

신청번호: <b>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서</b>													처리기간 1일	
①신청일자				②신청업체				③장치장소						
미인도물품 해제신청 내역														
④ 일련 번호	⑤ 교환권 번호	⑥ 여권 번호	⑦ 성 명	⑧ 국 적	⑨ 처리 구분	⑩ 구 분	⑪ 품목 번호	⑫ 상품 코드	⑬ 품 명	⑭ 규 격	⑮ 수 량	⑯ 단가 (\$)	⑰ 금액 (\$)	
「관세법」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, 「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7조에 따라 미인도물품 해제를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	
20 . . .														
신청인 (인)														
○ ○ 세 관 장 귀하								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